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644
----------	-------

발의연월일 : 2025. 9. 3.

발 의 자 : 박민규 · 강득구 · 조인철

김현정 · 김동아 · 오세희

허종식 · 임오경 · 양문석

최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에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6월부터 기존 3억원 이상이었던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이 1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검증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현행 검증기관은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으로 한정되어 있어 증가하는 검증 수요를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관리 경영지도사는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중소기업의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

단·지도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실제 현장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무 및 회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들도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산보고서 검증 기관 대상에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및 이들로 구성된 지도법인도 추가하여 증가하는 정산보고서 검증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27조제2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후단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
2.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기술지도법인 또는 경영지도법인으로서 3명 이상의 경영지도사(재무관리를 전문분야로 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
3.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경영기술지도사회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단체(3명 이상의 경영지도사로 구성된 단체에 한한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생략)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② ----- ----- ----- ----- ----- ----- ----- -----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u>터</u> ----- -----.
<신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